

사업장 보관용

보존기간	2023년 06월 28일 부터
(5년)	2028년 06월 27일 까지

2023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주)에스에프에이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2023년도 상 하 반기)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주)에스에프에이	대표자	김영민
소재지	406-840 (현장)인천 연수구 송도동 297-15 (본사)화성시 동탄순환대로29길 25		
전화번호		팩스번호	
근로자수	15명	업종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주요생산품	건축공사		

2. 측정기관명 : 한국산업보건기술원 주식회사

3. 측정일 : 2023년 06월 14일 ~ 2023년 06월 14일 (01 일간)

4. 측정 결과

유해인자	측정공정수	측정최고치	노출기준 초과공정(부서)수				개선내용
			계	개선완료	개선중	미개선	
소음	2	77.8dB(A)					
기타광물성분진	2	0.6592mg/m ³					

5. 측정주기 (해당항목 ○표 및 관련항목 기재)

최근 1년간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의 신규 가동 또는 변경 여부	없음	
최근 2회 모든공정 측정결과	1회미만	
화학물질 측정결과	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화학적 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
향후 측정주기	6개월	
향후 측정 예상일	2023년 12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8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사업주 김영민 (서명 또는 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2. 노출기준 초과부서는 개선 완료 또는 개선 중인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미개선인 경우는 개선계획서를 제출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2023 년도 상 하 반기)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주)에스에프에이		대표자	김영민
소재지	406-840 (현장)인천 연수구 송도동 297-15 (본사)화성시 동탄순환대로29길 25			
전화번호			팩스번호	
근로자수	15 명	업종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주요생산물	건축공사			

2. 작업환경측정 일시

가. 측정기간 2023년 06월 14일 ~ 2023년 06월 14일 (01 일간)

나. 측정시간 07 : 33 ~ 14 : 36 (06시간 03분)

3. 작업환경측정자 (분석자 포함)

성명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등록번호	비고
김하정	산업위생관리기사	20203260271B	분석사
김동관	산업위생관리기사	21202160172N	

4. 지정 한계 및 측정 실적

측정기관명	지정한계	측정 실시 사업장 일련번호(반기 기준) (총 누적 / 5명 이상 누적)
한국산업보건기술원 주식회사	240 개소	(133 / 109)

5.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종합의견: 불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8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측정자(측정기관의 장) 한국산업보건기술원 주식회사

(사업주) 김영민 귀하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종합의견

1. 예비조사 결과

가.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 작업공정도

- * 토목(장비) : 설비 및 자재 운반
- * 철골(철골) : 철골조립 및 자재이동 작업

■ 작업환경측정 대상 공정 및 유해인자

- 토목(장비) : 소음, 기타광물성분진
- 철골(철골) : 소음, 기타광물성분진

■ 근무형태

- * TBM : 07:30 - 07:40
- 근무시간 : 07:30 - 16:30
- 점심시간 : 11:30 - 13:00
- 연장근무 : 16:30 - 19:00

나. 작업환경 측정대상 공정별 및 유해인자별 측정계획

○ 작업환경측정에 걸리는 기간 : 2023년 06월 14일 ~ 2023년 06월 14일 (01일간)

○ 공장명 : 본사공장

측정대상 공정	측정대상 유해인자	유해인자 발생주기	근로 자수	작업시간 (폭로시간)	측정방법 (개인/지역)	예상시료채취건수 또는 측정건수
토목	소음	불규칙	1	620분 (620분)	도시소음계 (개인)	1
	기타광물성분진			620분 (620분)	여과채취법 (개인)	1
철골	소음	불규칙	9	620분 (620분)	도시소음계 (개인)	2
	기타광물성분진			620분 (620분)	여과채취법 (개인)	2

다.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 상태

부서 또는 공정명	화학물질명(상품명)	제조또는 사용여부	사용용도	월 취급량 (㎡.톤)	비 고
	해당사항 없음				

나-1. 단위작업 장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 제외) : (주)에스에프에이

○ 공장명 : 본사공장

○ 작업장기온: 22℃

○ 작업장습도: 69%

○ 전회측정일: . . . - . . .

부서 또는 공정명	단 위 작업장소	유해인자	근로 자수	근로형태 및 실제근로시간	유해인자 발생시간 (주기)	측정위치 (근로자명)	측정시간 (시작 ~ 종료)	측정 횟수	측정치	시간가중평균치(TWA)		노 출 기 준	측정농도 평가결과	측정 방법	비고
										전 회	금 회				
토목	장비	기타광물성분진	1	1조1교대 620분	620분	P1 (임신조)	07:33 ~14:33	1	0.6592		0.6592	7.7mg/m³	미만	1	
철골	철골	기타광물성분진	9	1조1교대 620분	620분	P2 (윤찬조)	07:36 ~14:36	1	0.4625		0.4625	7.7mg/m³	미만	1	
		기타광물성분진				P3 (람잔)	07:34 ~14:34	1	0.3669		0.3669	7.7mg/m³	미만	1	

※ 측정방법

- 1) 여과채취법/중량분석법(분진)

나-2. 단위작업 장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 : (주)에스에프에이

○ 공장명 : 본사공장

단위 : dB(A)

부서 또는 공정	단위작업장소 (주요발생원인)	근로자수	작업내용	근로형태 및 실제근로시간	발생형태및 발생시간 (주기)	측정위치 (근로자명)	측정시간 (시작 ~ 종료)	측정횟수	측정치	시간가중평균치(TWA)		노출기준	노출기준 초과여부	측정방법	비고
										전 회	금 회				
토목	장비	1	토목 장비 작업	1조1교대 620분	불규칙소음 620분	P1 (임신조)	07:33 ~ 14:33	1	75.1		75.1	88.2	미만	21	
철골	철골	9	철골 작업	1조1교대 620분	불규칙소음 620분	P2 (윤찬조)	07:36 ~ 14:36	1	77.8		77.8	88.2	미만	21	
					불규칙소음 620분	P3 (람잔)	07:34 ~ 14:34	1	76.7		76.7	88.2	미만	21	

※ 측정방법
21) 도시소음계/소음노출량계:dB(A)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 의견

3-1. 측정결과의 평가

[소음]

○ 공장명 : 본사공장

순번	부서 및 공정	단위작업장소	측정위치	측정치	노출기준	평가
1	토목	장비	P1 임신조	75.1 dB(A)	88.2	미만
2	철골	철골	P2 윤찬조	77.8 dB(A)	88.2	미만
3			P3 램잔	76.7 dB(A)	88.2	미만

[단일물질]

○ 공장명 : 본사공장

순번	부서 및 공정	단위작업장소	유해물질	측정위치	측정치	평가
1	토목	장비	기타광물성분진	P1 임신조	0.6592	미만
2	철골	철골	기타광물성분진	P2 윤찬조	0.4625	미만
3			기타광물성분진	P3 램잔	0.3669	미만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 의견

3-2. 문제점 및 개선대책

1. 사업장 개요

귀 사는 건축공사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6조에 의거하여 2023년 상반기 작업환경 예비조사 결과 주 유해요인으로는 소음, 분진류 등이 조사되었으며 해당 유해인자를 측정/분석하였습니다.

■ 작업환경측정결과서는 향후 5년 보존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시행규칙 제241조 제1항 규정)

2. 측정결과의 평가

■ 소음의 측정은 하루 작업시간 중 6시간 연속측정을 실시(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였습니다. 측정되지 않은 작업시간은 6시간 연속측정을 실시했을 때와 동일한 작업형태인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시간의 평균소음수준은 6시간 연속측정한 평균소음측정치와 유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LAV값을 TWA값으로 적용시켰음을 알려드립니다.

■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최고노출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인자	최고노출수준 (해당공정)	노출기준	평가
소음	77.8 dB(A) (철골)	88.2 dB(A)	미만
소음	75.1 dB(A) (토목)	88.2 dB(A)	미만
기타광물성분진	0.6592 mg/m ³ (토목)	7.7 mg/m ³	미만
기타광물성분진	0.4625 mg/m ³ (철골)	7.7 mg/m ³	미만

▶ 작업환경측정결과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는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측정결과는 앞의 측정결과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환경측정결과 하기와 같은 결과값이 도출될 경우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인자	LOD	LOQ
------	-----	-----

해당사항 없음

① 검출한계(LOD, Limit of Detection) : 주어진 분석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분석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가장 적은 농도나 양을 의미함

② 정량한계(LOQ, Limit of Quantization) : 주어진 분석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신뢰성을

가지고 정량적 측정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최소 검출 농도나 양을 의미함

③ 불검출(N.D) : 시료의 농도 값이 검출 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 해당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CMR 정보 안내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 의견

3-2. 문제점 및 개선대책

▶ 공학적 대책 방법

- ① 제거(Elimination) : 유해인자를 근원부터 제거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② 대체(Substitution) : 근본적인 개선방법이며 효과도 크지만 경제성, 작업의 특성, 생산조건의 제약에 의해서 적용할 수 없거나 공정 기술의 전문적 지식이 뒷받침되어야만 성공확률이 높은 방법입니다. 공정의 대체, 설비의 교체, 물질의 대체 등이 있습니다.
- ③ 격리(Isolation) : 물리적, 거리적, 시간적인 격리를 의미하며 쉽게 적용할 수 있고 효과도 비교적 좋습니다. 공정, 설비, 물질, 작업자 등을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 ④ 환기(Ventilation) : 효과가 좋아 많이 사용되지만, 한 번 시공에 많은 비용이 들고 설계에 따라 그 효과도 크게 차이가 나므로 전문가에 의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환기설비는 자체검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관리적 대책

- ▶ 귀 사업장은 작업장 내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공학적인 대책이 어려운 사항이므로 발생하는 소음 노출을 줄이기 위하여 관리적인 대책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 ① 작업자 개인보호구(귀마개, 귀덮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검정품)의 올바른 착용법 및 지속적인 착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 및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합니다.
 - ② 출입문 또는 작업장소 등 작업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귀마개 착용 표지판 부착합니다.
 - ③ 작업자 개인보호구(귀마개 및 귀덮개)의 착용률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④ 소음 초과 부서에 대한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관리해야 합니다.
 - ⑤ 각 설비의 경우 정기적인 점검으로 기기고장 및 이상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⑥ 작업자의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여 노출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 ⑦ 정기적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⑧ 감수성자의 조기발견과 적정배치 : 저소음부서로의 전환 또는 보직을 변경해야 합니다.

- ▶ 작업물을 인력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운반 시 올바른 작업방법에 대해 첨부하오니 작업자들은 습관화하여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작업 시 중량물에 몸의 중심을 가깝게 해야 합니다.
 - ② 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몸은 정확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 ③ 허리를 반듯이 유지하며 무릎의 힘을 이용해야 합니다.
 - ④ 수시로 스트레칭을 실시해야 합니다.
 - ⑤ 근력 및 근 지구력운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 ▶ 입식작업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부드럽고 층으로 된 바닥에서 일하게 해야 합니다.
 - ② 적당한 간격으로 팔을 벌리거나 필요할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 ③ 차량의 바닥처럼 움직이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표면이어야 합니다.
 - ④ 작업자가 계속해서 일하는 경우에는 탄력 있는 바닥이어야 합니다.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 의견

3-2. 문제점 및 개선대책

- ⑤ 작업장 내의 요소들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도 한눈에 볼 수 있게 배열해야 합니다.
- ⑥ 표지판이나 지시사항 등도 합리적인 가시영역 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⑦ 서서 일하는 작업자가 작업 중 다양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업무를 구성해야 합니다.
- ⑧ 작업순환이나 의자(좌식, 입/좌식) 또는 발 받침대 제공 등을 통하여 작업자가 작업 중 다양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⑨ 신발은 장기간 서서 일하는 작업 시 근육 피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발 모양을 변화시키지 않고 신발 뒷부분이 너무 높지 않은 단단한 형태이며 신발 바닥이 너무 얇지 않은 것을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 ⑩ 콘크리트와 같은 딱딱한 바닥에 장시간 서있거나 걸을 경우 발은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므로 목재나 코르크, 고무 등 탄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바닥 양탄자 피로예방매트 등을 깔아 발의 피로도를 줄이고 미끄러짐으로 인한 위험성을 제거 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에 따른 올바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 현장 내 관리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장소에 명칭게시의 부착상태가 양호하오나, 공종이 변경된 경우 또는 신규공종이 시작되는 경우 유해인자 명칭게시를 부착하여 작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안전하게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바랍니다. 관리대상물 명칭게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에 의거 현장 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시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 ③ 취급상 주의사항
-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 나목에 따른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관리대상 유해물질별로 분류하여 게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위생적 대책

▶ 현장 내에 작업자들의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가 양호합니다.

각 작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수준은 작업자의 감수성, 노출시간 등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담당자께서는 근로자들이 공정에 맞는 개인보호구(방독/방진마스크, 귀마개, 보호의 등)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보호구는 각 개인에게 지급하여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시어 유해물질로 인해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 의견

3-2. 문제점 및 개선대책

생길 수 있는 건강상의 장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① 작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보호구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자가 자발적으로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 ② 개인보호구는 청결한 보관함에 따로 보관하시고 파손 또는 오염된 보호구는 즉시 새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여분의 개인보호구도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개인보호구는 소모성제품이므로 파손 또는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새것으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④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보호구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 바랍니다.
- ⑤ 작업현장에는 보호구착용표지판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자발적으로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바랍니다.
- ⑥ 다음은 방독마스크 정화통 교체시기이니 작업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화통의 파손, 구멍, 찌그러지거나 심한 물리적 피해시, 흔들어서 소리가 날때
 - ㉡ 심한 악취로 인하여 호흡에 지장 초래시, 외부 도색이 1/3이상 벗겨졌을 때
 - ㉢ 물에 젖었을 때, 화학 작용제에 노출되었을 때

▶ 자기 감염 및 내/외부적 교차오염을 예방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실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작업복은 오염물질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오염되었다고 생각하여 작업복을 입은 채로 흡연 및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피하시고 식사 전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으시기 바랍니다.
- ② 작업복은 작업장 내에서만 착용하시고, 세탁 시 반드시 일반복과 분리하여 세탁하시기 바랍니다.
- ③ 작업자들은 개인보호구 착용 전 손을 청결하게 하신 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④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눈이나 피부에 닿았을 경우 즉시 깨끗한 물로 15분 이상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 개인보호구[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1항 3호에 의거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에 해당됩니다.

5. 기타사항

■ 안전. 보건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1항)실시

▶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교육 내용(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사항
-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 의견

3-2. 문제점 및 개선대책

- ③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④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⑦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규칙별표4 제1호 안전보건교육 시간(규칙 제26조 제1항 등 관련)

▶ 정기교육

- ①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②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③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④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자 :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①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②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 ① 일용노동자 : 1시간 이상
- ②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 ①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②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③ 단시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 2시간 이상

■ 금회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 ①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 ②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 ③ 자체 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 ④ 기타 당해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특수 건강진단 대상 안내

업체명 : (주)에스에프에이

○ 공장명 : 본사공장

공정명	단위작업장소	대상인원	유해인자	검진주기(개월)	비 고
토목	장비	1	기타광물성분진	24	
철골	철골	9	기타광물성분진	24	

▶ 근로자 배치 전 건강진단은 유해부서 또는 유해업무(상기 대상 공정)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각각 실시.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배치후 첫번째 실시 시기	두번째부터의 실시 시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마다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마다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마다
4	석면, 먼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마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 특수건강진단 주기의 일시단축 (주기의 1/2)

- ①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초과공정의 당해 유해인자 노출근로자
- ②직업병유소견자가 신규로 발생한 유해부서의 동일 작업 근로자
- ③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 위 유해인자는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른 참고자료입니다. 임시작업 및 신규 취급 물질에 따라 특수건강검진 기관에서 최종선정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인원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는바 검진 당시 최종인원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